

제46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3. 12. 20 (금), 15:00 ~ 18:0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석 : 김호섭 의장, 이순일 부의장, 나상신 평의원, 이재호 평의원, 이강준 평의원, 이효철 평의원, 임정민 평의원, 간사 김승권 팀장 총 13명 중 7명 참석
(불참 : 정승민 평의원, 윤성승 평의원, 강희진 평의원, 김진우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윤갑희 평의원)

4. 의안

- 심의사항 : 학칙 개정(안)
- 자문사항 : 2013학년도 교비회계 및 병원회계 2차 추경(안)
- 보고 사항
 -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보존 방안 처리 결과 통보 공문
 - 국가장학 2 자체 노력 계획서 수정 제출 내용
 - 캠퍼스 플라자 관련 사항 처리 결과
 - 제 5기 대학평의원회 구성 관련 사항

5. 주요 회의결과

가. 심의사항

- 아래의 학칙 개정 내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함.

[주요 개정내용]

- 제4조(기구) : 지역임상시험센터를 임상시험센터로 기구명 변경, 특수대학원 글로벌 제약임상대학원 신설
- 제8조(대학원) : 특수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신설, 금융공학협동과정 폐지, 삼성전기(주), LG전자(주) 학연산협동과정 폐지, 라이프미디어 학과간협동과정 신설, 공학대학원/경영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 전공 신설, 임상치의학대학원 전공 폐지 및 변경
- 제17조(등록금심의위원회)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 제21조(학생정원) :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정원 신설, 2014-1학기 대학원 입학정

< 간서명 란 >

의
장

원 조정 반영

- 제23조의2(계약학과) : 경영대학원 전공 신설 반영
- 제25조(재입학) : 재입학 허가 1회 제한 폐지, 재입학 불허기준을 동일 항에 명시, 재입학 관련 세부사항을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에 위임
- 제32조(휴학) : 휴학기간을 부득이한 경우에 허가, 휴학기간 미산입 조항을 학사과정에도 적용
- 제36조(재학연한) : 일반대학원 재학연한을 논문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설정
- 제44조(교육과정) : 특수대학원 간 교차수강 근거 신설
- 제46조(수강신청, 시험 및 성적) :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이수학점 표기
- 제52조(학사과정의 졸업연기) : 졸업연기자의 1학점 이상 수강의무 제도 폐지
- 제70조(학칙개정) : 학칙 사전 공고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단축

* 상세내용은 11차, 15차 교무회의 결과 참조

나. 자문사항 - 교비 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2013학년도 2차 추경 (안)

○ 교비회계 2차 추경

1) 주요 보고사항

- 국가장학금 추가 배정 및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보고함. 당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배정했으나, 추가 집행한 장학 규모를 인정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함에 따라 배정 금액 약 31억여 원보다 많은 38억여원을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어 국고 수입을 증액키로 함
- 국가장학금에 대한 평의원회 회의 (2013.12.20)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급 내용을 변동하여 확정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변동 사항을 평의원회에 이메일로 보고하고 회의록에 남기기로 함.
- 국가장학2의 배정이 등록금 동결 및 장학금 자구노력과 연계되어 있어 학교가 국가장학2를 받기 위한 출혈이 너무 큼. 국가 정책 변동에 의한 제도이므로 적절하게 대응코자 하나 내년에도 더 많은 장학금을 배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故 이홍수 과장 영결식 및 장례식 비용, 직원 심리치료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함. 현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 전산,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조사와 유서 분석 등을 통해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키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함.

< 간서명 란 >

의 장

2) 주요 자문 사항

- 어학교육원 및 경영대학원등의 수입 감소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특히 어학교육원 문제는 기초교육대학 AFP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를 당부함.
- 경영대학원의 운영 수익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경영진단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故 이홍수 과장 문제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 학교쪽에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유감 표명 및 사태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었던 부분은 매우 아쉬운 상황임을 지적함. 옴부즈맨 제도 도입 및 업무량에 따른 인원 책정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자문함.
- 등심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평의원회와 연계하여 자문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함.

○ 부속병원 회계 2차 추경

1) 주요 보고사항

- 웰빙센터 상가 임대료 수입이 증가한 부분과 권역외상센터 도비 지원금으로 인한 국고지원금 수입 증가 등에 대해 보고함
- 인건비 증가 (사학연금 부담금 등) 및 재료비 증가, 임시가설 장례식장 시설 공사 등으로 지출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 보고함.
- 부속병원 회계에서 의과대학 교비회계로 지원하는 78.8억원이 45.7억원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법정 부담금 및 강의료 감소, 학생 수 감소, 시설관리 및 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임. 특히 관리 운영비 중 온라인 저널 구입 관련 경비는 학생 경비로 계정이관 하여 관리운영비 증감 폭이 큼.

2) 주요 자문 사항

- 권역외상센터 도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함.

다. 기타 사항

○ 캠퍼스 플라자 관련 사항

1) 주요 보고사항

< 간서명 란 >

의 장

- 총무처장이 캠퍼스 플라자의 위탁임대 계약 체결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된 사항에 대해 보고함.
- ① 캠퍼스 플라자는 용도가 균린생활 시설, 교육용 시설, 업무용 시설 등 복잡하게 되어 있음. 수익 창출을 위해 상가 활성화가 가능한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을 임대키로 함. 그러나 캠퍼스 플라자가 상가 건물로 적절치 않다는 주변의 나쁜 소문 때문에 임대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② 2012년 11월 (주)대복과 위탁임대계약을 체결함. 1차 공개 경쟁 입찰에 응찰회사가 대복이 유일하여 유찰되고 그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대복과 수의 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함.
 - ③ 그 이후 법인에서 위탁 임대 계약 형식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위탁임대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위탁임대 계약을 하지 말라는 내부 방침이 있었음. 이에 따라 계약 파기를 요청함.
 - ④ 당초 대복과의 위탁 임대 계약조건에 최초 상가 형성을 이유로 권리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과 전차인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모두 즉시 학교에 입금토록 한다는 계약내용이 있었으나 이를 위반함에 따라 계약위반과 계약 무효 해지를 통보함.
 - ⑤ 계약 개시 기간인 2013년 3월 1일 이전인 2013년 1월 20일에 계약 위반사항을 토대로 계약 위반과 무효 해지를 통보했고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대복에서는 학보사, 언론, 국회의원, 청와대 등을 동원하여 반발함.
 - ⑥ 이에 따라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려는 노력을 했고 최종적으로 10월말 경에 상호 합의를 통해 타결됨.
 - . 보증금 *억원에 월 임대료 ****만원 (시중 임대가의 70% 반영)이 당초 계약 내용이었으나 위탁 임대를 하기로 했던 대복과 대복이 계약하고자 했던 전차인들 (3개 업체)에 대해 학교가 직접 계약하고 대복과도 계약하기로 함. 또 총 임대료를 ****만원으로 올리기로 함.
 - 현재 1층에 좋은 공간은 임대가 되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신사옥이 건축되면 이전 예정임. 3층~7층 사이는 평생교육원, 어학교육원 등과 심리상담센터 등이 있어 임대가 어려운 상황임. 3층~7층 사이를 통으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 시간을 두고 좋은 조건인 경우에만 임대할 예정임.

2) 주요 자문 사항

- 캠퍼스 플라자 당초 예상 수입 예산과 실제 수입 간에 격차가 있음. 학교 재정이 어려운 만큼 수입이 좀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또 위탁임대계약으로 인한

< 간서명 란 >

의 장



문제는 분명히 제기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문제가 생김. 결과적으로 정리는 됐지만 업무 추진과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을 정확히 확인하여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자문함.

- 캠퍼스 플라자는 관련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또 재정이 어려운 학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특임교원 임용과 관련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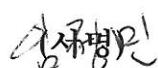
- K 및 L 전의원 등이 공공정책 특임교원으로 채용된 과정과 병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 등에 대해 정확한 정황을 알아보고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간서명 란 >

의

장

2013년 12월 20일

의장	김호섭	(서명)
부의장	이순일	(서명)
평의원	나상신	(서명)
평의원	윤성승	(서명)
평의원	이재호	(서명) 
평의원	이강준	(서명) 
평의원	이효철	(서명) 
평의원	임정민	(서명) 
평의원	정승민	(서명)
평의원	강희진	(서명)
평의원	김진우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평의원	윤갑희	(서명)
간사	김승권	(서명)